

전국규모연맹체 조직지침

제 1 장 총 칙

1. 본 지침은 대한체육회(이하 "본회"라 함)에 가맹한 경기단체의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맹체의 조직은 전국 각급 통할단체로 하고 명칭은 한국 ○○육상연맹이라 한다.
3. 연맹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연맹체는 등록단체(팀) 상호간의 자치적인 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해당경기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사 업

연맹체의 사업은 해당 중앙경기 단체의 승인을 얻어

1.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등록단체만으로 거행하는 모든 경기대회를 주최할 수 있고
2. 동일급 국제교환경기를 할 수 있으며
3. 동일급 국제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조 직

연맹체는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동일급의 등록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일반부(군 및 실업팀)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실업육상연맹
2. 대학(교)급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대학연맹
3. 중.고등학교급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 중.고등학교육상연맹
4. 초등학교급의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초등학교육상연맹
5. 연맹체 구성은 상기 1, 2, 3, 4호의 원칙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연맹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 2) 개인 경기에 있어서는 등록단체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회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경기단체가 그 실정에 따라 별도로 이를 정한다.
 - 3) 각급전국연맹체를 조직할 수 있으나 등록 단체가 30개 이상 이어야 한다.
6. 종목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연맹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1. 중앙경기단체에 대한 연맹체의 권리
 - 1) 대의원을 선출 파견한다.
 - 2)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3) 해당 중앙경기단체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 4) 해당 중앙경기단체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중앙경기단체에 대한 연맹체의 의무
 - 1)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규약과 제규정 및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연맹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맹체에 대한 등록단체의 권리
 -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 2) 연맹체가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3) 연맹체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4. 연맹체에 대한 등록단체의 의무
 - 1) 연맹체규약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연맹체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선임임원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약간인
 - 전무이사 : 1인
 - 이 사 : 23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 감 사 : 2인
 - 2) 대의원 : 등록단체별 1인
 - 3) 위촉임원
 - 고 문 : 약간인
2. 임원의 선출방법
 - 1)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임임원의 2/3는 동일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2)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선임임원에 선출될 수 있으며, 선임임원에 선출된 후에는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 3)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4) 대의원은 동일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의 장이 당해 등록단체의 임원중에서 서면으로 추천한다
 - 5) 감사는 2인중 1인은 회계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 6) 고문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동일인의 겸직제한
 - 1) 동일인이 각각 다른 경기종목의 연맹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동일인이 동일 중앙경

기단체내의 다른 연맹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동일인이 동일 중앙경기단체내의 전국연맹체와 시도경기연맹 임원을 겸임할 수 있으나 회장, 전무이사직은 중복 겸임할 수 없다

3) 선임임원은 중앙경기단체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당해 중앙경기단체에 준하되, 학교연맹은 학년 년도로 할 수 있다.

제 7 장 회 의

1. 대의원 총회

1) 총회는 연맹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동일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당해 단체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원단체 설치 및 제명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주요사항

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등록단체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학교연맹은 학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총회는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에는 2분지 1이상, 50개 이상 100개 미만일 때에는 3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100개 이상인 때에는 등록단체의 4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연맹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별도로 정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단,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총회는 다른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1) 이사회는 연맹체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2) 이사회는 선임 임원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상임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지휘, 감독
 - 기타 주요사항
- 4)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5) 이사회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 6)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위원회

1. 설치

- 1) 전국연맹체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 2)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 한다
- 3) 각종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운영

- 1) 전국연맹체는 상벌 및 기술(선수선발)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9 장 효 력

1. 다른 규정과의 관계

- 1)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정관, 중앙경기단체 정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2) 본 지침은 각급 연맹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경과조치

- 1) 본 지침 개정에 따르는 연맹체 발족시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중앙경기단체가 결정한다.
- 2) 본 지침 개정일 현재의 임원 임기는 중앙경기단체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 3) 연맹체의 규약은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198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지침은 199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지침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12)

1. 본 개정지침은 이사회 승인일(2013.9.12)부터 시행한다.